

麗·元과 耽羅와의 關係

高 昌 錫

〈 目 次 〉

- | | |
|----------------------|---------------------|
| I. 序 言 | III. 元朝의 官府設置와 그 變遷 |
| II. 耽羅의 對蒙接觸과 元朝의 政策 | IV. 結 論 |

I. 序 言

13世紀에도 耽羅 즉 濟州島는 地政學的으로 중요한 위치를 占하고 있었다. 당시 日·宋間 交通로의 中間 지점에 위치하여 兩國 사이에 오고 가는 船舶들의 中途 寄港地로서 一役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태풍을 만난 船舶들의 漂着地이기도 하였다. 물론 이에는 東支那海를 흐르는 海流영향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당시 蒙古(元)의 世祖는 高麗를 服屬시킨 후 南宋을 經略하고 日本을 정벌하기 위한 戰略基地로서 耽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高麗를 통해 耽羅 使者의 蒙古 入朝를 중용했을 뿐만 아니라 三別抄 평정 후에는 그들의 直轄地로 삼아 그들의 官府를 설치하고 그들이 亡할 때까지 지배, 관리했던 것이다. 물론 때로는 高麗에 還附하여 高麗에서 官吏를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耽羅의 牧馬場을 관리하는 등 명목으로 依然히 그들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元代의 歷史 기록인 元史와 新元史 및 元史의 典據가 되는 元高麗紀事의 耽羅 관계 記事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國內 史書인 高麗史 등을 參照하여 耽羅와 麗·元과의 關係를 고찰하여 보려고 시도한 것이다.

中國 歷代王朝의 正統의 史書라 할 廿五史는 中國의 上古로부터 明代까지의 中國史 研究上 가장 기본적이고 권위있는 歷史書인 동시에 우리 나라 歷史 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文獻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廿五史 중에서 耽羅關係 記事가 斷片的으로나마 記載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 예를 들면 後漢書·三國志·魏書·北史·隋書·舊唐書·新唐書·元史·新元史·明史 등

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新唐書와 元史에는 간략하긴 하지만 耽羅傳(新唐書에는 僂羅傳) - 실은 附記에 가깝다 - 이 收錄되어 있다. 특히 元史와 新元史에는 高麗 元宗代로부터 恭愍代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耽羅 관계 記事가 간간히 보이고 있어 耽羅史 연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당시의 耽羅와 麗·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東北亞의 國際 관계를 考察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하여 舉論한 것은 寡聞하여 볼 수 없었고, 부분적으로 金庠基의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對하여」(震檀學報 9·10·13, 1939 ~ 1941; 東方文化交流史論攷 1948), 金泰能의 「耽羅와 元の 牧養時代」(제주도 18·19, 1964 ~ 1965) 등이 있을 뿐이다. 前者는 所論의 末尾에서 三別抄의 濟州入據와 그 정벌과정을 해박한 식견으로 詳論하였고, 後者는 三別抄 정벌후의 牧馬場의 설치 과정과 元·明交替期에 있어서의 牧胡의 亂 등을 주로 記述하였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위의 두 論考와 重複되는 부분은 가급적 概觀으로 그치고, 먼저 耽羅의 對蒙接觸 과정과 蒙古(元)의 耽羅에 대한 政策, 다음으로 三別抄 평정 후의 元朝의 官府 설치와 그 변천 및 達魯花赤의 行跡 등에 대해서 주로 고찰하려고 한다. 그러나 처음 의도한 바와는 달리 자료가 극히 斷片的이고 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筆者의 未熟으로 충분히 考究하지 못했음은 自認하는 바이며 이점 후일 補完해 보고자 한다.

II. 耽羅의 對蒙接觸과 元朝의 政策

耽羅의 對蒙接觸이 언제부터라고 분명히 斷言할 수는 없으나 元史나 新元史의 斷片的인 기록들에 의하면 高麗 元宗 8年(蒙古 世祖 至元4, 1267)頃부터라고 추측된다. 즉 元史나 新元史에는,

- ① 「乙巳 百濟遣其臣 梁浩來朝 賜以錦繡有差」(元史 卷6 世祖 至元4年 春正月條)
- ② 「乙巳 百濟國遣使來朝」(新元史 卷8 世祖 至元4年 春正月條)

라 하여 耽羅의 使臣 일행이 元宗 8年 正月에 蒙古에 來朝하였다. 그런데 위의 두 記事에 보이는 百濟가 耽羅의 誤記임은 분명하지만 梁浩의 身分에 대해서는 星主나 王子나 하여 說이 區區하다.¹⁾ 그리고 그러한 說은 모두 高麗史의 다음과 같은 記事에 緣由하고 있다.

- ③ 「濟州星主來見 甲子 遣正言玄錫以星主如蒙古」(高麗史 卷26 元宗7年 11月 丙辰條)

1) 이것은 梁浩에 대하여 상세한 것을 전해주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며 濟州道誌(上卷)(濟州道 1982) pp. 54 ~ 56 에는 星主라 했다가 뒤에 削除되었으며 金庠基는 王子로 추측하였다.(同: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對하여」〈東方文化交流史論攷 1948〉 p.182)

이에 의하면 元宗 7年 11월에 耽羅 星主가 蒙古에 朝會하기에 앞서 먼저 麗廷에 來見하였고 麗廷에서는 星主를 正言 玄錫과 함께 蒙古로 보내고 있다. 이때 玄錫이 同行한 것은 星主를 蒙古까지 인도하는 책임인 것 같다. 그런데 金錫翼의 耽羅紀年 卷1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 ④ 「(A) (元宗)八年春 草賊文幸奴構亂 王子梁浩與副使崔托 舉兵誅之 (B)附元史至元四年正月乙巳 百濟遣其臣梁浩來朝 賜以錦繡有差 (C)按此時無百濟之稱而此云百濟者 恐是耽羅之訛也 且耽羅星主 以去年十二月如元 則其曰 是年正月來朝 恐無不可 而況梁浩乃是耽羅王子者乎 由此則云 星主者 亦是王子之訛 而國號之訛無疑矣」

라 하고 주로 本記事 (A)(B)와 前述 高麗史의 記載를 연관지어 (c)“이 시기에는 百濟란 칭호가 없었으니 元史에 百濟라 한 것은 耽羅의 訛傳이다. 또 高麗史에 耽羅 星主가 去年 12月(11月의 誤)에 蒙古에 갔다고 하였으나 是年 正月에 來朝하였다고 함이 옳으며 梁浩는 耽羅의 王子이니 高麗史에 星主라 함은 王子를 잘못 쓴 것임에 틀림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高麗史의 星主와 元史의 梁浩를 同一 인물로 보고 星主를 王子의 誤記라 한 것이다. 또 梁浩를 王子로 보는 근거는 (A)의 元宗 8年의 文幸奴의 亂 때에 王子 梁浩가 副使 崔托과 함께 亂을 討平하였다는 데에 의거한 것이다.²⁾

그러나 高麗史의 星主와 元史의 梁浩를 同一 인물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高麗 高宗朝에 濟州判官을 지낸 金坵의 詩文集인 止浦集³⁾ 卷2 遣濟州星主告奏表의 頭註에,

- ⑤ 「元宗七年丙寅十一月 濟州星主來見 同月甲子 遣正言玄錫星主如蒙古」⁴⁾

2) (A)의 記事 내용은 李元鑣의 耽羅志 古跡條에도 同一한 내용이 보인다.

3) 止浦 金坵(1211 ~ 1278)의 詩文集으로 후손인 金澤이 家寶로 전해오던 遺稿를 1795年(正祖 19) 集錄한 것을 1801年(純祖 元)에 간행한 것이다. 어려서부터 詩文에 능해 그가 올린 表詞를 항상 보아오던 元의 翰林學士 王鶚은 그의 글을 찬양하면서 직접 만나볼 수 없는 처지를 한탄했다고 한다. 元宗 때 禮部侍郎이 되어 元나라와의 外交文書를 맡았으며 書狀官으로 元나라에 다녀온 후 北征錄을 지었다. 그 뒤 右諫議大夫를 거쳐 知僉議府事에 까지 이르렀다. 元宗 때 李藏用 柳敷과 함께 神宗 徽宗 등의 實錄을 修撰했고 忠烈王 때 高宗實錄 편찬에도 참여했다. 止浦集은 卷頭에 宋煥箕의 序가 있고 이어서 卷1 : 七言絕句 10首, 七言古詩 2首, 卷2 : 應製錄에는 教州 5편, 表箋 69편, 卷3 : 啓 1 疏 5, 書 3, 碑文 1 및 附錄으로 止浦의 年譜와 神道碑文并銘이 포함되 있다. 그가 濟州判官으로 左遷된 것은 「嘲圓覺經」이란 詩 때문이라고 한다. 즉 당시의 집권자 崔沆이 圓覺經을 雕刻하고 金坵에게 跋文을 부탁했을 때 이를 거절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그 거절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전국민이 佛法을 崇信하면서 福이나 얻으려는 경향을 조롱한 것 같다.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集部 2> III : 서울大學校 도서관 1980) p. 293

4) 告奏表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一天無外四海在中 雖尺地安敢自私 故今日但期相率 恭惟陛下 馨德懷遠 大明燭幽 鉅細不遺 道叶乾坤之涵毓 遐邇胥悅 恩隆父母之庇憐 夫濟州也 元附小邦 最爲深島 難名謫狀 縱多斷蠻 蒙之風 不隱忠誠 庶僭沐聖神之化 俾爾渠首 朝于闕庭 願子專効以恪勤 於此可垂其照亮」

라 하여 高麗史와 同一한 내용의 記事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止浦集의 記事는 高麗史의 記事보다 훨씬 앞서, 그것도 記事 내용과 일치하는 시기에 生存했던 인물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에서 記事 내용에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高麗史의 纂者が 止浦集의 내용을 그대로 轉寫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또 止浦集에는 耽羅 星主가 麗廷에 來見한 同月(11月) 甲子에 玄錫과 함께 蒙古에 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耽羅 星主가 직접 蒙古에 朝會하였음은 元史 卷 208 耽羅傳에

⑥ 「… 且耽羅國王嘗來朝覲 今叛賊逐其主 據其城以亂 舉兵討之 義所先也 」

라 하였고, 이의 典據가 되는 元高麗紀事 附의 耽羅條에도

⑦ 「又兼耽羅國王曾來朝見 今叛賊逐其主 占據城郭 義當先平 」

이라 한데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嘗」「曾」 등의 記述로는 정확한 시기를 詳考하기는 어려우나 耽羅 星主가 일찍이 蒙古에 來朝하였던 것만은 분명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高麗史의 記事는 아무런 瑕疵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元史 世祖本紀(①의 記事)와 同書 耽羅傳(⑥의 記事)의 내용이 相違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元史 編纂時에 本記는 元朝十三朝實錄을, 耽羅傳은 元高麗紀事を 각기 典據로 하였기 때문이다.⁵⁾ 즉 두 原典은 纂者が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相違한 바가 있었던 것을 刪改添削함이 없이 그대로 原典의 내용을 轉寫한 데서 나온 결과인 것이다. 그러면 당시 耽羅의 星主는 누구였을까? 耽羅星主遺事에는 5代 星主 高適이 元宗의 부름을 받고 上京하여 玄錫과 함께 蒙古에 다녀왔다고 하였다. 星主職이 世襲職이었음을 감안할 때 再言의 여지가 없다.⁶⁾ 따라서 ①의 記事에 梁浩는 臣下라 하였으니 ④의 記事와 같이 王子일 가능성은 있으나 星主는 분명히 아닌 것이며 錦繡를 差等있게 下賜하였다 함은 비록 玄錫이 同行하였다고는 하나 蒙古에 來朝했던 일행이 그 두사람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5) アジア歴史事典3. (東京 平凡社 1962) p.107 經世大典項目, p.151 元史項目 參照.

6) 耽羅星主遺事 (高氏宗門會總本部 1979) p.153. 李元鎮의 前揭書 人物條에도 「高適 元王辛卯登第 則入金闈 因觀親選鄉 至元八年 神義軍三別抄叛入耽羅 國家濟師討之 盡殲 以高適爲留總官 特令安集餘民 戊寅夏 赴朝親受金牌 繼世遂縣焉 五世孫仁朝襲爵…」이라 하였는바 元宗2년 과거에 登第하였으나 觀親하기 위해 還鄉하였고 三別抄 平定 후에는 留總官이 되어 安撫하였으며 元宗 15년에는 入朝하여 벼슬이 높았는데, 爵位는 5세 손 仁朝가 계승하였다고 하였다. 즉 여기서 爵位란 星主職을 말하는 것임은 同書에 계속하여 「子高碩爲西道副千戶碩之子順良 傳襲星主 弟順元繼之……」라 하여 星主爵位는 대대로 傳襲하였다고 한 데서 알 수 있으며 爵位를 계승하였다는 仁朝(且)에 대해서는 高麗史 卷 31 忠烈王 20年 11月條에 「庚戌賜耽羅王子文昌裕星主高仁且 紅鞞牙笏帽蓋靴各一事 耽羅今歸于我 故有是賜 然進馬于元不絕」이라 하였다. 그리고 柳洪烈 監修의 韓國史大事典(1974. p.122)에도 高適을 耽羅星主라 하였으며, 그는 元宗 11년 2월~5월 사이에도 두번째로 元宗을 모시고 蒙古에 다녀왔다.(耽羅星主遺事, p.153)

추측된다. 따라서 ①의 記事는 일행중 梁浩만을 기록한데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蒙古에의 旅程도 高麗에 來朝한 星主 일행이 玄錫의 인도로 高麗를 出發한 것이 去年 즉 元宗 7年 11月 甲子이며 蒙古에 도착한 것이 是年 즉 그 다음해 正月인 것이다. 당시 麗廷에서 출발하여 蒙古에 까지 使臣들이 가는데는 한·두달이 보통 걸린 것으로 高麗史 등에는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耽羅의 使臣 일행이 高麗를 거쳐 蒙古에 까지 來朝하게 되었던 것일까?

당시 耽羅는 高麗와는 職制·官署를 달리하며 星主·王子를 중심으로 얼마간은 獨自의인 지배 체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高麗로부터 句當使의 파견이나 武散階의 授與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를 받았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耽羅가 高麗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은 肅宗 10年(1105) 耽羅郡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耽羅는 高麗의 지방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고 毅宗 때에는 다시 耽羅縣으로 降等되고 麗廷으로부터 직접 令·尉가 파견되었다.⁷⁾ 그러나 星主·王子의 爵位는 여전히 世襲制였고 또 朝鮮初까지 그 歷史의 權威와 정치적 세력은 유지되었다.⁸⁾ 그리고 당시 高麗는 蒙古의 侵入에 對抗하여 都邑을 開京(松都)에서 江華島로 옮기기까지 하면서 끈질기게 蒙古에 항전하였으나 끝내는 굴복하고 高宗 45年(1258)에는 蒙古에 대한 강화가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다음해인 同王 46년에는 太子(뒤의 元宗)가 蒙古로 가서 강화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이후 蒙古에서는 高麗를 통해 日本으로부터도 朝貢을 받기 위해 使臣을 여러 차례 日本으로 파견하고 있다. 즉 元宗 7年(1266) 11월에 兵部侍郎 黑的 등을 日本에 파견하였는데 일행은 풍파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으며⁹⁾ 同王 9년에 다시 高麗의 潘阜를 使臣으로 보내어 蒙古의 國書와 高麗의 國書를 日本에 전달하였다.¹⁰⁾ 그러나 그 國書의 내용은 修好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隸屬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 무렵 日本은 鎌倉幕府의 後期 즉 北條氏의 執權 시기였으며 蒙古는 그후 元宗 14年(1273)까지 전후 여섯차례에 걸쳐 해마다 使臣을 日本에 파견하였으나 日本에서는 끝내 그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蒙古의 世祖는 한편으로는 日本에 使者를 보내어 朝貢을 강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南宋과 日本에 대한 戰略上의 要衝으로서 耽羅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高麗를 통해 耽羅 使臣의 蒙古에의 入朝를 高麗에 종용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蒙古에서는 耽羅 使臣들을 접견하여 日本 또는 南宋 經略의 요충으로서 耽羅의 타당성을 문의하는 한편 그들을 통해 耽羅를 芻蕘하고 그들의 戰略基地로 이용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런 世祖가 耽羅에 대하여 자못 큰

7) 拙稿: 「耽羅의 郡縣設置에 대한 考察」(제주대학교 논문집 14, 1982) pp.203~222參照

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建置沿革條에 「太宗二年 星主高麗禮王子文忠世等 以星主王子之號 似涉僭擬 請改之 以星主爲左都知管 王子爲右都知管」이라 하였다.

9) 元史 卷6 世祖 至元 3年 8月 丁卯條, 同 4年 6月 乙酉條, 高麗史 卷26 元宗 7年 11月 癸丑條, 同 8年 春正月條

10) 元史 卷6 世祖 至元 5年 9月 己丑條, 高麗史 卷26 元宗 8年 丁丑條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元史 卷 208 耽羅傳에

⑧ 「耽羅高麗與國也 世祖既臣服高麗 以耽羅爲南宋日本衝要 亦注意焉」

이라 한 바와 같이 高麗를 臣服시킨 후 耽羅를 南宋과 日本과의 교통의 요충으로 삼아 注意하였다고 한데서도 알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약 1년반이 지난뒤에 世祖는 南宋과 日本 등을 經略하기 위한 前哨基地로서 耽羅 및 黑山島를 살펴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使臣들을 高麗에 파견하였다. 즉 그 一次 파견에 대해서는 元高麗紀事에

⑨ 「(A) (至元五年) 七月二十日 詔 都統領脫朶兒·武德將軍統領王國昌·武略將軍副統領劉傑(傑의 誤) 等 使高麗 與其來朝者大將軍崔東秀偕行 (B) 八月 至其國 植(元宗) 出昇天府迎之 蓋諱以 閱軍造船也 (C) 詔曰 卿遣東秀來奏 備兵一萬 造船千隻事 今特遣明威將軍都統領脫朶兒·武德將軍統領王國昌·武略將軍副統領劉傑 詣彼整閱軍數 點視造船 (D) 其所造船隻 聽其指畫 如耽羅已與造船之役 不必重煩 如其不與 即令別造百艘 (E) 其軍兵船隻 整點足備 或往南宋或日本 逆命征討 臨時制宜 (F) 仍仰差去官 先行相視黑山日本道路 (G) 卿亦差官 護送導達」¹¹⁾

이라 하였다. 즉 蒙古의 世祖는 (A) 至元 5년(元宗 9, 1268)에 脫朶兒·王國昌·劉傑 등 3인의 使者를, 高麗에서 蒙古에 來朝했던 崔東秀와 함께 高麗로 파견하였는데 (B) 10월에는¹²⁾ 元宗이 그들 일행을 昇天府에서 영접하였다. 당시 高麗에서 崔東秀를 元廷에 파견했던 것은 (C) “군사 1만명을 징발하고 전함 1천쌍의 건조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이미 元宗 9년 3월에 蒙古의 使者가 와서 “我朝가 南宋을 問罪하려 하니 그 士卒과 舟艦을 돕는 것은 自量하여 多小를 辦出하고 輸送하는 糧餉은 儲積하여 둘 것이며¹³⁾” 또 李藏用이 同年 4월에 蒙古에 갔을 때에도 世祖는 李藏用에게 出師, 助戰을 요구하면서 徵兵 목적과 造船의 수요까지 밝혀 南宋과 日本 중에서 택일할 것이라”고 하였다.¹⁴⁾ 李藏用은 同年 6월에 蒙使 吾都止와 本國에 돌아와 戰艦의 數와 軍額을 課하였는데 이를 보고하기 위해 同年 8월에 崔東秀를 蒙古

11) 이에 대하여 元史 卷 6 世祖 至元 6年 7月 丙子條에는 「高麗國王王植 遣其臣崔東秀 來言 備兵一萬 造船千隻 詔遣都統領脫朶兒 往閱之 就相視黑山日本道路 仍命耽羅 別造船百艘 以同 調用」이라 하였고 同書 卷 208 高麗傳에는 「(至元五年) 七月 詔都統領脫朶兒 武德將軍統領 王國昌 武略將軍副統領劉傑等使其國 與其來朝者 大將軍崔東秀偕行 八月 至其國 植出 昇天府迎之 蓋諱以閱軍造船也」라 하였다. 高麗史 卷 26 元宗 9年 冬 10月條에도 같은 내용의 記事가 보이니 여기서는 「……十四人來朝」라 하여 使者일행이 14명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12) 高麗史 卷 26 元宗 9年條에는 蒙古에서 使臣이 파견되었던 사실을 10月 庚寅條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元高麗紀事의 8月은 10月の 착오이다.

13) 同上書 同王 同年 3月 壬申條

14) 高麗史節要 卷 18 元宗 9年 6月條

에 파견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世祖는 前述 3인의 使者를 파견하여 崔東秀가 보고한 바의 軍士의 수효와 船艦을 조사, 확인케 하였고, 특히 造船工事의 경우는 (D) 耽羅도 처음에는 공동으로 참여시킬 계획이었으나 뒤에는 따로 百艘를 짓도록 하였다. 그리고 (E) 軍額과 船數가 만족스레 갖추어지면 南宋이 될지 아니면 日本이 될지 모르나 命을 거역하면 치겠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결정은 내리지는 아니하였지만 渡海作戰의 준비로서 우선 高麗로 하여금 兵員과 艦船을 확보하게 하려던 것이었다. 또한 이때에 (F) 3인의 使者로 하여금 黑山島와 日本으로 가는 海道도 시찰케 했는데 (G) 元宗에게는 이를 위해 官吏를 선발 파견하여 인도케 하였다.

이리하여 蒙使들은 高麗의 안내官인 郎將 朴臣甫와 都兵馬錄事 禹天錫 등을 따라 黑山島를 시찰하였는데¹⁵⁾ 이에 대해서는 元史 卷 167 王國昌傳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⑩「至元五年 人有上書言 高麗境內黑山海道 至宋境爲近 帝命國昌往視之 泛海千餘里 風濤洶湧 從者恐勸還 國昌神色自若 徐曰 奉天子威命 未畢事而遽返可乎 遂至黑山乃還 帝延見慰勞」

즉 元의 世祖가 高麗에 파견된 使者들로 하여금 黑山島까지 시찰하게 한 목적은 黑山海道가 宋境에 아주 가깝다는 建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사실은 宋史 卷 487 高麗傳에

⑪「自明州定海 遇便風 三日入洋 又五日抵墨山(黑山の誤) 入其境 自墨山 過島嶼詰曲礁石間 舟行甚駛 七日至禮成江」

이라 한 것 처럼 明州의 定海에서 便風을 만나 3일 내지 5일을 항해하면 黑山島에 닿으며 여기서 다시 沿岸 島嶼를 따라 급히 배를 몰면 7일만에는 禮成江까지 닿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당시 黑山島가 麗·宋 해상 교통의 주요 寄港地임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世祖의 注意를 끌게 되었던 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黑山島 시찰은 南宋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¹⁶⁾ 이리하여 蒙使 일행이 黑山島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同年 12월이었으며 귀국하기에 앞서 脫染兒는 또 兵員을 點檢하였고 劉傑은 西海道の 造船 상황을 檢閱한 후 同月 하순경에 고려를 떠났다.¹⁷⁾

그런데 耽羅로 하여금 따로 배 百隻을 짓도록 한 것은 당시 耽羅의 立地의 조건이 船舶 건조에 유리했을 뿐 아니라 大船 건조 기술에 있어서도 우수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顯宗 2년(1012)에 大船 2隻을 高麗에 進上한 바 있었고¹⁸⁾ 文宗 12년(1053)에는 宋과 국교를 再開하기 위하여 耽羅·靈巖 등지에서 材木을 벌채하여 大船을 건조하려 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즉 高麗史 文宗 12年 8月條에는

15) 高麗史 卷 26 元宗 9年 10월 己亥條

16) 金庠基: 高麗時代史(서울 東國文化史 1961) p.594.

17) 高麗史 卷 26 元宗 9年 12月條

18) 同上書 卷 4 顯宗 3年 8月 壬寅條

⑫「王欲於耽羅及靈巖伐材造大船將通於宋…且耽羅地瘠民貧 惟以海產乘木道 經紀謀生 往年秋伐材過海新創佛寺 勞弊已多 今又重恐生地變……」

이라 하였으며, 더우기 당시 耽羅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海產과 木道(배질)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 것은 耽羅의 주산업이 水産임을 말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일찍부터 海外로 진출하게 하는 계기도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本土와의 왕래가 빈번하였음은 물론 때로는 폭풍을 만나 中國大陸이나 日本 安南 琉球 등지에 漂着하는 예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大形 船舶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며, 航海術에 있어서도 뛰어났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蒙古에서 大船을 건조하게 한 데에는 船舶 건조용의 材木이 풍부했음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宋과의 국교 재개를 위해 大船을 건조하려 했다는 사실이나 佛寺를 창건하기 위해 木材를 벌채했던 사실(⑫의 記事) 외에도 元史에는

⑬「甲寅……造船三千艘 敕耽羅發材木給之」(元史 卷11 世祖 至元17年 5月條)

라 하여 至元 17년(忠烈王 6)에 耽羅에서 造船用材 3千隻 분을 공급케 했다는 記事가 있으며 또한 耽羅를 戰艦 修理場으로 삼기도 하였으니¹⁹⁾ 이 모두가 漢拏山을 중심으로 나무가 무성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造船所는 扶安·邊山·長興·元冠山 등 모두 木材가 풍부한 海邊 名山이었으며 耽羅의 경우는 南宋 日本 등지와와의 要衝임을 감안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耽羅에서 船舶을 건조했던 사실을 元史에서 찾아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⑭「乙亥 敕以耽羅新造船 付洪茶丘 出征」(元史 卷11 世祖 至元18年 2月條)

⑮「壬申 敕平瀾·高麗·耽羅及揚州·隆興·泉州 共造大小船三千艘」(同上書 卷12 世祖 至元19年 9月條)

⑯「辛酉 以耽羅所造征日本船百艘 賜高麗」(同上書 卷13 世祖 至元22年 夏4月條)

즉 2차 日本 정벌時에 耽羅에서 新造한 船舶을 洪茶丘의 出征軍에 합쳤으며 일본 정벌에 실패한 후에도 耽羅를, 3千隻의 大小船舶 건조에 참여시켰는가 하면 日本 정벌을 목적으로 耽羅에서 건조한 船舶을 高麗에 下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1년 뒤에 두번째로 元의 世祖는 前述한 3人의 使者를 다시 高麗에 파견하였다. 즉 元高麗紀事 附의 耽羅條에 의하면

⑰「世祖皇帝至元六年七月五日 樞密官奉旨 差千戶脫朵兒·王國昌·劉傑 赴高麗地界 相視耽羅等處道路 整點軍兵船艦 今高麗王選差知識海道地面好官 領引前去 詔曰 諭高麗國王王植 以其曾有

19) 同上書 卷29 忠烈王 6年 8月條

人云若至耽羅欲往南宋并日本道路甚易今復遣明威將軍都統領脫朶兒·武德將軍統領王國昌·武略將軍副統領劉傑就彼點整卿所備軍兵船隻并先行相視耽羅等處道路卿當應副大船可選堪委見職正官務要引送道路以副朕懷²⁰⁾

라 하였는데 詔書의 내용은 1차 파견 때와 同-하였다. 즉 목적이 같으며, 다만 1차 파견 때에는 黑山島 시찰이었는데 비해 이번에는 耽羅等處의 道路를 살피게 하였다. 이것은 耽羅의 海道가 南宋이나 日本으로 가는데 매우 수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때에도 元宗에게는 海道地面을 잘 아는 現職의 正官을 선발하여 3人的 使者가 耽羅를 시찰하는데 인도하도록 하였고 그간에 高麗가 준비한 軍兵과 船隻을 조사,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元의 世祖는 두차례에 걸쳐 같은 3人的 使者를 高麗에 파견하였는데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南宋이나 日本을 정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高麗로 하여금 정벌에 필요한 軍兵과 船隻을 징발, 건조하게 하고, 또 두 나라를 정벌하는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海道를 사전에 답사하여 확인해 두기 위한 것이다. 특히 1차에서는 耽羅에서 건조할 船隻의 수를 지적하였고, 2차에서는 耽羅等處의 海道를 살피게 한 것은 海島 要衝으로서 耽羅에 대한 世祖의 관심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말한다.

당시 耽羅의 地政學的 중요성은 高麗史에

18 「以濟州副使判禮賓省事權兼防護使 朝議濟州海外巨鎮 宋商島倭無時往來 宜特遣防護別監 以備非常 然舊制但守倅而已 不可別置防護 遂以得璜兼之」(高麗史 卷 25 元宗元年 2月 庚子條)

라 한 바와 같이 濟州는 海外巨鎮으로 宋商과 島倭가 수시로 來往하는 곳이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즉 日·宋間에 來往하는 船舶들의 中途 寄港地로서 혹은 태풍을 만난 船舶들의 漂着地로서 耽羅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²¹⁾

20) 元史 卷 6 世祖 至元 6年 秋 7月 癸酉條에는 「復遣都統領脫朶兒·統領王國昌等 往高麗點閱所備兵船 及相視耽羅等處道路」라 하고 同上書 卷 208 高麗傳에는 「(至元六年)七月 帝『遣明威將軍都統領脫朶兒·武德將軍統領王國昌·武略將軍副統領劉傑 相(往)視耽羅等處道路 詔(高麗國王)植選官引達(導送)』以人言 耽羅海道 往南宋日本甚易故也」라 하였으나()와 『』은 同書 耽羅傳의 내용) 元高麗紀事와 같은 詔書의 내용은 보이지 아니하며, 高麗史等에는 파견된 使者의 이름도, 詔書의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21)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記事들에서도 알 수 있다.

(A) 「癸酉 有司刻奏 前濟州副使盧孝貞·判官李珪 在任時 日本商船 遇颶風敗於州境 孝貞等私取綾絹銀珠等物 徵孝貞銀二十八斤 珪二十斤 流于島」(高麗史 卷 23 高宗 31年 2月條)

(B) 「是月 日本官船大使如眞等 將入宋求法 僧俗并二百三十人 泊開也召島 二百六十五人 到群山楸子二島……」(同上書 卷 25 元宗 4年 6月條)

(C) 「…今年五月 貴國商船 泊到耽羅洲諸 耽羅性頑頑 射逐其船 邏捉二名而送之…」(同上書 卷 30 忠烈王 18年 冬 10月 庚寅條)

그런데 至元 6年 7月 2次로 高麗에 파견한 蒙使들에 대해서는 高麗史 등에 이렇다할 使者가 온 것 같은 형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시 西北面 兵馬使營의 記官이던 崔坦 등이 亂을 일으켜 西京留守 및 西北面 諸州의 守丞을 살해하고 蒙古에 叛附하고자 압록강을 건너다가 大富城에서 우연히 蒙古 使臣 脫朶兒를 만나게 되었다. 이때 脫朶兒가 崔坦에게 蒙古에 건너가는 事由를 물으니 崔坦은 속여 말하기를 “高麗가 장차 백성을 모두 섬으로 데리고 들어 가려고 北界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하므로, 우리들이 여러 城의 守丞을 죽이고 들어가 上國에 고하려 하였다.”²²⁾ 는 것이었다. 이에 脫朶兒는 崔坦으로 하여금 義州副使 金孝臣 등 22인을 잡게 하여 蒙古로 데리고 갔는데 이때 蒙使 脫朶兒는 日本 정벌의 준비로서 耽羅를 시찰하라는 世祖의 命을 받고 高麗로 오던 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崔坦으로부터 蒙古에 歸附하려는 상세한 의도를 들은 脫朶兒는 이러한 사실을 먼저 世祖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당초의 사명을 포기한 채 蒙古로 되돌아 간 것이다. 이와 같이 世祖는 三別抄가 耽羅에 入據하기 전부터 海道의 要衝으로서 黑山島와 함께 耽羅를 중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珍島에서 패한 三別抄의 餘衆이 金通精의 인솔하에 耽羅에 入據한 것은 元宗 12年 (蒙古 至元 8, 1271) 5월이었으며 이후 약 3년간 耽羅를 據點으로 蒙古에 抗爭하였다.

이러한 三別抄의 對蒙抗爭으로 世祖가 갈망하는 南宋 또는 日本 정벌에의 계획은 자연히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日本에 대한 武力 정벌에 앞서 高麗를 통해 日本의 朝貢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使臣을 파견하였음은 전술한 바이다. 日本의 태도 역시 강경하여 그때마다 실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世祖는 여러 가지로 苦心을 했던 것 같다. 즉 日本에 대해 무력 정벌을 감행하는나 아니면 耽羅의 三別抄를 먼저 평정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元史 卷 208 耽羅傳에도

⑲ 「(至元)九年 中書省臣及樞密院臣議曰 若先有事日本 未見其逆順之情 恐有後辭 可先平耽羅 然後觀日本從否 徐議其事 且耽羅國王嘗來朝覲 今叛賊逐其主 據其城以亂 舉兵討之 義所先也」²³⁾

라 하여 中書省과 樞密院에서 의논한 결과를 世祖에게 아뢰는 내용 중에 “日本의 경우는 아직 그 逆順之情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뒤에(可否間) 말이 있을 것이니 먼저 耽羅를 평정하고 나서 그 從否를 보아 서서히 그 일을 의논함이 좋으며 또 耽羅는 일찍이 그 星主가 朝覲한 일이 있으므로 먼저 平定함이 도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元 (蒙古는 1271年 11月부터 元으로 改稱)의 世祖는 三別抄 정벌에 자못 큰 관심을 가지고 至元 9年 (元宗 13, 1272) 正月부터 정벌에 필요한 舟糧을 高麗로 하여금 갖추게 하였고²⁴⁾ 또 麗廷에서도 元宗이 직접 元廷에 耽羅 정벌을 요

22) 高麗史 卷 26 元宗 10年 10月 庚子條, 高麗史節要 卷 18 同王 同年條.

23) 元高麗紀事에는 이에 대하여 자못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나 강령하므로 引用을 생략한다.

24) 「丙寅 詔遣不花及馬璘 諭高麗具舟糧 助征耽羅」(元史 卷 7 世祖 至元 9年 春正月條)

정하였다.²⁵⁾ 즉 三別抄가 沿岸 각지에 출몰하여 船舶을 불사르고 歲米의 運送船을 탈취하는 등 高麗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나 官軍(高麗)의 兵力단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²⁶⁾ 그런데 耽羅의 三別抄 정벌을 위해 동원된 軍士力에 대해서는 元史에

20 「己巳 敕發屯田軍二千 漢軍二千 高麗軍六千 仍益武衛軍二千征耽羅」(元史 卷7 世祖 至元9年 11月條)

라 하여, 屯田軍, 漢軍, 武衛軍이 各各 2千, 高麗軍이 六千으로 합하여 모두 1萬 2千名이었으며 그 징발 과정에 대해서는 元高麗紀事에 다음과 같이 記錄되었다.

21 「卿等議合用多少兵力 回奏 臣等約量 本處屯田軍可摘二千 復於漢軍內選三二千人 船中載馬費力 蒙古軍可少差 高麗國合僉五六千 共一萬餘軍可矣 上曰 武衛軍差二千 卿等更議餘者」

즉 世祖가 兵力의 징발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을 때 中書省에서는 本處(高麗) 屯田軍에서 2千, 漢軍에서 2千, 그리고 蒙古軍에서 約干을 선발하여 高麗軍과 합치면 5·6千名이 되므로 이들만 해도 1萬名이 넘는다고 하자 世祖는 武衛軍에서 2千名을 더 징발하라고 하여 편성된 것이다. 그리고 정벌군의 인솔장군 선발에 있어서도 中書省에서는 第一軍은 忻都, 第二軍(武衛軍)은 鄭溫, 第三軍은 洪茶丘로 議定하였다²⁷⁾ 고 보고하였다.

이리하여 耽羅의 三別抄를 정벌하기 위해 출발한 것은 元宗 14年(元 至元10, 1273) 4月 9日이며, 이를 討平한 것은 同月 28日이었다. 즉 前揭書에

22 「(至元十年)四月九日 經略使忻都史樞及洪茶丘等 率兵船大小計一百有八艘 進發 二十八日 攻破耽羅賊黨悉平 朝廷於其地 立耽羅國招討司 屯鎮邊軍一千七百人」

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元史 世祖本紀나 同書 耽羅傳에는 三別抄가 評定된 것을 6月로 기재하고 있으나²⁸⁾ 4月の 錯誤이다. 이것은 同書 卷 208 高麗傳에

23 「(至元十年)四月 經略使忻都同洪茶丘領兵入海 攻破耽羅賊 禽金通精等 奉詔誅之 六月 植遣 其大將軍金忻 表奏攻破濟州」

라 하여 三別抄가 平定되었음을 元廷에 보고한 것이 6月이므로 이로 인한 錯誤로 생각된다. 그리고 三別抄 정벌을 위해서 元朝에서 파견한 인물에 대해서도, 元高麗紀事에는 당초 忻都·

25) 「辛亥 高麗國王王植 請討耽羅餘寇」(同上書 至元9年 6月條)

26) 耽羅入據後의 三別抄의 활동에 대해서는 金庠基의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對하여」(東方文化交流史論叢 1948 所收), 金潤坤의 「三別抄의 對蒙抗戰과 地方 郡縣民」(東洋文化 20·21 合輯號 1981 所收) 등에 詳述되어 있다.

27) 元高麗紀事 附의 耽羅條

28) III節의 引用記事 ㉞ 및 ㉟ 參照

鄭溫·洪茶丘로 議定되었는데 실제로 참가한 것은 鄭溫대신 史樞로 기재하고 있다.(元史 耽羅傳도 같다) 그러나 元史 卷 147 史樞傳에는 耽羅 정벌에 참가했음을 示唆하는 기재가 없다. 그리고 高麗史에는 史樞도 鄭溫도 記載되어 있지 않다.²⁹⁾ 그러나 元史 卷 163 鄭溫傳에는

24 「(至元)九年 詔 溫統蒙古漢人女真高麗諸部軍萬人 渡海征耽羅 評之」

라 하였고 同書 卷 8 世祖本紀에도

25 「命忻都鄭溫洪茶丘 征耽羅」(至元 10年 春正月 戊午條)

라 하고 있으므로 元高麗記事(元史 耽羅傳도 同)의 錯誤로 보아 두고자 한다.

III. 元朝의 官府設置와 變遷

元朝가 耽羅를 지배, 관리하기 위해 耽羅에 설치하였던 官府와 그 變改 과정에 대해서는 新元史의 다음과 같은 記事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6 「耽羅國招討司 其貢賦 每歲進毛施布百匹 後改爲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至元)二十一年又改爲軍民安撫司 三十一年還隸高麗國 大德四年復置耽羅總管府 五年改軍民萬戶府 是年 高麗王鉅 請罷耽羅總管府 隸本國 置萬戶府 如合浦鎮邊事例 從之」(新元史 卷 51 地理志 6)

대충 이를 정리하여 보면

- ① 耽羅國招討司
- ② (耽羅國)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
- ③ (耽羅國)軍民安撫司
- ④ 高麗還附
- ⑤ 耽羅總管府
- ⑥ (耽羅國)軍民萬戶府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로써 보면 高麗 元宗 14年(元 至元 10, 1273) 6월에 耽羅國招討司가 설치된 이후 忠烈王 27年(大德 5, 1301) 7월에 軍民萬戶府가 설치되기까지 약 30年 동안에 여러 차례 官府의 名稱을 改變시키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元朝가 이렇듯 자주 官府를 改變시키고 있는지는 상세히 傳해

29) 高麗史 卷 104 金方慶傳, 元史 卷 154 洪茶丘傳에도 史樞의 記錄은 없다.

주는 史書가 없으므로 분명히 밝혀 말할 수는 없다. 다만 元代의 이러한 官府가 갖는 性格·機能을 살펴봄으로서 이에 접근해 볼 수 밖에 없다.

먼저 耽羅國招討司(이하 招討司) 부터 그 置廢 과정을 살펴 보면 招討司는 耽羅에서 三別抄가 平定된 뒤인 元宗 14年 6월에 설치되었다. 즉 元史 卷208 耽羅傳에는

㉗ 「(至元)十年正月 命經略使忻都史樞及洪茶丘等 率船大小百有八艘 討耽羅賊黨 六月評之 於其地耽羅國招討司 屯鎮邊軍千七百人」

이라 하여 三別抄가 평정된 뒤에 곧 招討司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6월에 三別抄가 평정되었다고 한것은 4월의 착오이다. 그러므로 6월이라 한 것은 바로 이때에 招討司가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前掲書 世祖本紀⁵⁾에는

㉘ 「戊申 經略忻都等兵至耽羅 撫定其地 詔以失里伯爲耽羅國招討使 尹邦寶副之」(元史 卷8 世祖 至元10年 6月條)

라 하여 失里伯과 尹邦寶가 각각 招討司의 長次官인 招討使와 副使로 임명, 파견되었다. 그런데 高麗史에는 이때에 達魯花赤이 설치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³⁰⁾ 이는 招討使의 錯誤이다. 그러면 이 招討司는 대체 어떠한 官府인가? 十通分類總纂에는

㉙ 「掌招收討殺盜賊之事 不常置」(職官類 招討司條)

라 하였고 續通志에는

㉚ 「明置招討使一人 副招討一人 吏目一人 臣等謹接 宋制招討使 亦以大臣充之 有征討則置 金招討使 掌招懷降附 征討 攜貳 元招討使 則多置於沿邊諸要地 明則略倣元制 而爲土官武職 品秩職守 皆與宋金異也」(職官略 明官制 招討司條)

라 한 바와 같이 盜賊(蠻夷)을 招收(歸順)하고 討殺(討伐)하는 官府이며 따라서 그 長官인 招討使는 降附를 招懷하고 攜貳(叛者)를 征討하는 武官職이었다. 그리고 中國에서는 이러한 官府가 이미 唐代부터 설치되어 征伐을 관장했으며 이후 宋·金·元 및 明代에도 약간의 변질은 있으나 制度 자체는 그대로 답습되었다. 특히 元代에는 주로 沿邊 諸要地에 설치되었는데 그 品秩·人員이나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㉛ 「招討司 秩正三品, 達魯花赤一員 招討使一員 經歷一員 土番刺馬剛等處 天全俺不思 沿邊溪洞 以下各置副使一員 無達魯花赤 唆尼諾番 征沔長河西裏管軍 檜裏管軍 脫思馬田地」(元史 卷91 百官志 招討司條)

30) 高麗史 卷27 元宗 14年 閏6月 丙辰條에 「元置達魯花赤于耽羅」라 하였으나 招討使의 錯誤로 後日의 達魯花赤 설치를 올려 記載한 것에 不過하다.

라 하여 招討司職의 品秩은 正3品이었고, 그 屬官은 達魯花赤 1人, 招詔使 1人, 經歷 1人으로 구성되었다. 그 설치된 지역도 湖廣省과 四川省 등지의 蠻夷지역으로 주로 그 지역 居住의 蠻族에 대한 歸順이나 討伐에 관한 일을 담당했던 것 같다. 그런데 土番·刺馬剛等處나 天全·俺不思의 沿邊溪洞과 같은 지역에는 각기 副使 1人을 두고 達魯花赤은 두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達魯花赤이 실제로 모든 官府에 설치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므로 招討司의 屬官도 達魯花赤이 없는 경우에는 招討使·副使·經歷의 각 1人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며, 그 중 經歷(明代에는 吏目)은 土官職으로 해당 지역 住民이 임명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耽羅의 경우는 어떠한가? 前述 引用의 ㉔의 記事에서와 같이 招討使(失里伯)와 副使(尹邦實)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아 湖廣 四川 등지의 경우처럼 達魯花赤은 설치되지 않았던 것이며 혹 土司職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측케 한다. 즉 招討使와 副使는 蒙古人과 漢人이므로 지역 사정에 밝은 島民을 임용하여 보좌케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도 三別抄 정벌 직후이므로 “叛者의 토벌이나 降者의 招撫” 즉 耽羅人을 회유하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戰略上 要衝인 耽羅를 그들의 直轄地로 만드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숙원인 南宋 또는 日本 정벌을 위한 戰略基地로 이용하는데에도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耽羅에는 언제부터 達魯花赤이 파견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招討司가 (耽羅國)軍民都 達魯花赤總管府(이하 總管府)로 改變되는 것과도 연관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元史에는

㉔ 「以遜攤爲耽羅國達魯花赤」(元史 卷8, 世祖 至元12年 6月 戊辰條)

이라 하였고 高麗史에는

㉕ 「丁未 濟州達魯花赤遣使來督戊卒 王令金光遠等 調四領兵 雖兼近侍 悉皆僉發 使將軍梁公勳等 領行」(高麗史 卷28 忠烈王 元年 8月條)

이라 하여 忠烈王 元年(元 至元 12, 1275) 6월에 遜攤이 耽羅國 達魯花赤으로 임명되었고, 同年 8월에는 濟州 達魯花赤이 使者를 보내어 와서 戊卒을 督勵하고 있다. 이는 곧 이 해에 招討司가 總管府로 改變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招討使로 임명되었던 失里伯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元史 卷133 失里伯傳에

㉖ 「失里伯 蒙古人…(至元)十年 遷昭勇大將軍 爲耽羅國招討使 奉旨入見上都 改管軍萬戶 領襄陽諸路新軍 從丞相伯顏等渡江 破獨松關 下長興 取湖州…… 十八年卒 子塔刺赤……」

이라 한 것 처럼 失里伯은 招討使로 있다가 世祖의 命을 받고 歸國하였다. 즉 歸國後 管軍萬戶가 되어 襄陽路의 新軍을 거느리고 丞相 伯顏을 따라 南宋 정벌에 참여한 것이다. 元朝의 南宋 정벌은 至元 7年 이래 南宋 최대의 견고함을 자랑하던 漢水의 要衝地 襄陽城을 4年の 死鬪 끝

에 함락시키고, 여기에 本營을 설치하는 한편 西아시아 遠征 중에 있는 伯顏을 불러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각지의 諸將을 불러, 至元 11(1274)年 9月 南宋 총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므로 失里伯도 이 무렵에 소환된 것이다. 따라서 그가 招討使職에서 離任한 것은 적어도 至元 11年 9月 이전인 것이며, 至元 12年 6月에는 遜攤이 達魯花赤으로 임명되고 있으므로 그간 약 10개월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나 遜攤이 達魯花赤으로 임명되었다 함은 바로 이때에 耽羅國招討司가 (耽羅國)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로 改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없다.³¹⁾ 그것은 招討司 설치 이후 總管府가 설치되기까지 1年餘의 시간이 흐르고 있으므로 招討司 설치의 本來 목적도 달성되었던 것이며, 더우기 軍事的인 官府에서 行政的인 官府로 改變하여 管轄함이 오히려 명분상 事勢에 더 합당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總管府로 改變되었다고 해서 軍事的인 의미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었으니 그것은 官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耽羅의 軍政과 民政을 達魯花赤이 總管한다는 의미의 官府인 것이다.

元대의 지방행정구역은 宋代의 路·府 등의 옛 명칭을 그대로 답습하였고 路 위에는 다시 行中書省(行省)을 설치하여 지방 행정의 최고 단위로 삼았다. 總管府는 路에 설치된 官府인데 元史에 의하면³²⁾ “至元初부터 설치되었으며³³⁾ 同 20年에 와서는 10萬戶를 단위로 하여 上·下路로 나누고, 要衝에 해당하는 지역은 10萬戶에 미치지 못하여도 上路에 포함시켰다. 10萬戶 이상을 가진 上路에는 屬官으로 達魯花赤 1人, 總管 1人(모두 正3품)을 두었으며 그 職務는 所屬官府內의 행정외에 勸農의 일도 관장하였고 江北에 설치된 總管府의 경우는 諸軍의 留守까지 겸하였다. 뒤에 屬官으로 同知 治中 判官 각 1人이 重置되었는데 下路(秩은 從3品)인 경우에는 治中만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同 23年에는 推官 經歷 知事 司吏 譯吏 通事 등이 또 설치되었으며 그 人員은 1人 내지 2人 혹은 定員이 없거나 많은 일의 繁簡에 따라 人員의 多寡가 정해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總管府의 屬官 중에서 達魯花赤은 蒙古人, 總管 이하는 漢人등으로 임명되었으나 뒤에 변질되고 있다.³⁴⁾

耽羅에 설치한 總管府의 경우는 「要衝의 地」, 즉 특수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겠으나

31) 耽羅志에는 忠烈王 2년에 總管府가 설치된 것으로 기재하였고(建置沿革條)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古跡條에는 塔羅(刺의 誤) 赤이 水山坪에 馬匹 등을 放牧한 이후에 설치되었다고 하였으나 분명치 않다.

32) 元史 卷91 百官志 諸路總管府條.

33) 元代에 總管府가 처음 設置된 것은 世祖 至元 2년부터이다(和田清:支那官制發達史 1942). p.338.

34) 이러한 사실은 元史의 다음과 같은 記事에서 엿볼 수 있다. (A)「(至元二年 二月)甲子 以蒙古人充各路達魯花赤 漢人充總管 回回人充同知 永爲定制」(卷6 世祖) (B)「(至元五年三月 丁丑) 觀諸路女真契丹漢人爲達魯花赤者 回回畏兀乃蠻唐人仍舊」(同上) (C)「(至元十六年九月戊午) 議罷漢人之爲達魯花赤者」(卷10)

그 구성원이나 品秩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을 알 수가 없다. 다만 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이하 勝覽) 耽羅志 등에 그 屬官에 대하여 간략하지만 言及이 되어 있으므로 우선 이를 引用해 보고자 한다.

㉟ 「達魯花赤府軍民安撫使府 高麗忠烈王時 元塔羅赤載牛馬駱驢羊來 於于水(首)山坪 馬畜番息 是後 元設達魯花赤府及總管府 以高仁旦(朝)爲總管 行署府事」(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古跡條)³⁵⁾

㊱ 「(勝覽과 同) 以高仁朝爲總管 適爲總管副 文愼爲同知 總管塔兒 副判高貞幹 知事金叔 提空進士鄭珉·梁琪 知房進士夫貞才·高順時·文節隨·趙有賢·安庇爲令史 行署附事 尋罷之」(耽羅志)

이 상에서 살펴보면 勝覽에는 總管府의 屬官으로 達魯花赤(塔羅赤) 總管(高仁旦 一作朝) 등이 있어서 府의 일을 맡았음을 알 수 있는데 耽羅志에는 이외에도 同知(文愼), 令史(數人) 등의 직명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達魯花赤을 제외하고는 屬官 모두가 외부에서 임명되어 온 者가 아니고 本島 住民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總管府도 忠烈王 10年(元 至元 21, 1284)에는 다시 耽羅國軍民安撫司(이하 安撫司)로 變改되었다. 즉 元史에는

㊲ 「立耽羅國安撫司」(元史 卷13 世祖 至元21年 正月 庚午條)

라 하였고 新元史에는

㊳ 「庚午 立江淮·荆湖·江西·四川行樞密院 及耽羅國安撫司」(新元史 卷11 世祖 至元21年 春正月條)

라 하였다. 그런데 元代의 安撫司는 招討司와 같이 遠邊에 설치되었으며³⁶⁾ 그 品秩이 內地의 下州에 해당하는 正3品인 점도 招討司와 같다. 그리고 그 屬官으로는 達魯花赤 安撫使, 同知 副使 僉事 經歷 知事가 각 1員이 설치되었으나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았으며³⁷⁾ 民族 구성에 있어서도 達魯花赤을 제외하고는 當地의 土着人을 임명하였다. 특히 耽羅國安撫司의 경우 장관의 칭호는 「同知耽羅國軍民安撫司事」라 하였고³⁸⁾ 品秩은 正5品에 상당하였다. 耽羅志에 의하면

35) ()은 耽羅志의 記載임.

36) 元史 卷91 百官志 宣慰司條 末尾에 「其在遠服 又有招討 安撫·宣撫等使 品秩員數 各有差等」이라 하였다.

37) 同上書 安撫司條

38) 新元史 卷62 百官志 安撫司條에 「…… 元典章 西夏新民安撫副使 正五品 同知耽羅國軍民安撫司事 正五品」이라 보인다. 즉 同知耽羅國軍民安撫司事는 長官 意味이나 管民長 내지 行政長官에 不過하고 그 위에는 執政官인 達魯花赤이 존재한다.

㉟ 「又設軍民安撫使府 以塔羅赤爲達魯花赤 高仁朝安撫使 文昌佑府使 汀總都達同知事 蔡有仁簽事 行署府事」(耽羅志古跡條)

라 하여 安撫司로 改稱된 후의 屬官으로 達魯花赤(塔羅赤, 羅는 刺의 誤), 安撫使(高仁朝), 府使(副使?文昌佑), 知事(汀總, 都達), 簽(僉)事(蔡有仁)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元史 安撫司條의 屬官에 비하면 同知 經歷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總管府에서 安撫司로 改稱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2차에 걸친 日本 정벌이 실패한후 敵의 보복침입에 대비하고 또 3차정벌을 겨냥하여 行政의인 차원에서 다시 軍事的인 차원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런데 元史에

㊱ 「甲子 置耽羅總管府」(元史 卷20 成宗 大德4年 6月條)

라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前述한 바와 같이 元朝에서는 總管府를 安撫司로 改稱하였으나 日本 정벌을 숙원 사업으로 여기던 世祖가 죽고 成宗이 即位하자 忠烈王은 耽羅의 選附를 元廷에 要求하였다. 즉 高麗史에는

㊲ 「王以四事奏于帝一請歸耽羅 二請……帝命耽羅還隸高麗」(高麗史 卷31 忠烈王 20年 5月 甲寅條)

라 하였고 元高麗紀事 附의 耽羅條에는

㊳ 「(至元)三十一年五月二十九日 丞相完澤等奏 高麗王上言 耽羅之地 自其祖宗以來 臣屬其國 林衍逆黨既平之後 尹邦寶以計求隸朝廷 乞仍舊 臣等不知其詳 雙叔輩當知之 俟詢問明白 果無窒礙 別奉界之上曰 此小事 何必多言 可使還屬高麗」

라 하여 耽羅는 祖宗 이래로 高麗에 臣屬하였으나 三別抄 平定 이후에 元朝에 隸屬되었으므로 高麗에 選附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成宗도 이에 승락을 하였다. 그러나 元朝에의 貢馬만은 예전 대로 시행하게 하였다.³⁹⁾ 이리하여 忠烈王 20년에 耽羅는 高麗에 돌아왔으며, 그 이듬해 耽羅를 濟州로 고치고 高麗에서 官吏를 파견하였다.⁴⁰⁾

그러나 이후 元朝에서는 耽羅의 牧馬場을 관리하기 위해 斷事官 등을 파견해 오다가 忠烈王 26年(元 大德4, 1300)에는 다시 耽羅總管府(㊱의記事)를 설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 總管府도 다음해에는 耽羅國軍民萬戶府로 改稱되었다. 즉 高麗史에 의하면

39) 注6의 高麗史 卷31 忠烈王 20年 11月 庚子條 參照

40) 高麗史 卷31 忠烈王 21年 夏4月條에 「癸丑 以判秘書省事崔瑞爲濟州牧使」라 하였고 高麗史節要 卷21 同王 同年條에는 「復改耽羅 爲濟州 以判秘書省事崔瑞爲牧使」라 보인다.

“... 또 耽羅總管府를罷하여本國에예속시키고萬戶府를설치할것을請하는表에『땅이만일敵國에隣接하면防備를빈틈이없이할것이오,하늘은반드시낮을것을듣는것이니要請할것은마땅히들리게할것입니다.바라건데부圖의힘을의지하여後悔의색을없앨까하나이다.엎드려생각컨대이작은耽羅는倭國에접근하여있으니姦인들이문득오고문득감으로혹시나事情이누설될까두려워하여戊卒로하여금경계를엄히하고裝備를가다듬게하여옛봄을허용치아니할것입니다.이에所在의軍官에게일러將帥가되게하고마땅히宣命을加하여서위엄을떨것입니다.前者에臣이건의하려한바軍民都指揮使司를설립하는것은上國이일찍이命이있었음을알지못하고한갓本國의舊例에무릇大官으로변경에出鎮하는者에게는指揮使의이름을떠게하느것이므로이이름에宣命과虎符를加受함은合浦鎮邊事와같이하고자하였을뿐이었습니다.지금中書省咨를받자온바奏請하여耽羅軍民總管府를설립하려하니事勢가크게틀림이있고일이本來의所望이아니오니혹시나便利함을쫓는것을許하여고집하지말고그저施設하는바에실수가없게하시와耽羅總管府를罷하시고이전대로本國에예속시켜萬戶府를開置케하여合浦鎮邊의일과같이하되다만頭目人員에게宣命과虎符를頒降하여위엄을더하여鎮庄게하시면뿔컨데털이겪질있음과같아서그부찰바를얻을것이오또팔이손가락을쓰고같아서움직임이마땅치않음이없을것입니다.”⁴¹⁾

라고하였다.이에대해서中書省의회답은征東省이慶尙·全羅道鎮邊萬戶府의예에따라耽羅에도萬戶府를설립하고자하는일은所請한데에따를것이라고⁴²⁾하였다.이리하여그2개월후인忠烈王27년(元大德5)7월에는耽羅軍民萬戶府가설치된것이다.元史에

④ 「戊申 立耽羅軍民萬戶府」(元史 卷20 成宗 大德5年 7月條)

라한것이그것이다.⁴³⁾ 원래元代의萬戶府는鎮守機關이었다.따라서合浦鎮邊萬戶府와같이控制日本하기 위해서는행정기관인總管府보다는鎮守기관인萬戶府가타당하는것이萬戶府의改稱이유였다.이미元の世祖는2차일본정벌에실패한후日本의보복침입을막기위해耽羅에戊卒(防守軍)을증원한바있고⁴⁴⁾合浦等處에는鎮邊萬戶府를설치하기도하였다.⁴⁵⁾ 그리고萬戶府의屬官으로는高麗의萬戶副萬戶 등의軍官,軍人으로서충당되었으며다만그頭目人員에대해서는元朝에서宣命과虎符를頒降하였다.⁴⁶⁾ 이리하여耽羅軍民萬戶府는元朝의직접관할에서征東行省으로이양되었으나당시征東行省은高麗政府와는별개의기관

41) 高麗史 卷32 忠烈王 27年 5月 庚戌條

42) 同上書 同條.

43) 同上書 同年 3月條에는「(癸卯) 元置耽羅軍民萬戶府」라 하였으나 7월의 착오이다. 왜냐하면 總管符를罷하도록 元朝에 奏請한 것이 5월이기 때문이다.

44) 同上書 卷29 同王 8年 2月 癸巳條.

45) 同上書 同王 7年 10月 己亥條.

46) 高柄翊: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東亞交涉史의 研究, 1980 所收) p.223.

이고 다만 그 장에 있어서 高麗王이 겸하고 있을 따름이었다.⁴⁷⁾

이상에서 元朝가 耽羅를 지배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官府와 그 변천에 대해서 살펴 보았거니와 元代의 이들 官府에는 예외없이 達魯花赤이 그 長으로 倂設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元代의 達魯花赤은 蒙古帝國에서부터 元朝에 이르기까지 中央이나 地方·大小를 가릴 것 없이 各種의 官衙에 설치되었던 官職名으로, 管內의 최고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이며 또한 감독관이었다.⁴⁸⁾ 다만 中書省이나 樞密院·御事臺 등 중앙의 上級官廳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 특색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達魯花赤이 高麗에 처음 설치된 것은 高宗 18年(元太宗 3, 1231) 撤禮塔의 제 1차 침입 후에 西京을 비롯한 西北面 지역의 14개의 要城에 72명의 達魯花赤을 두었다는 것부터이다. 그러나 蒙古軍이 점령한 지역의 넓이로 보아 이렇게 많은 수의 達魯花赤이 설치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疑問이다. 그 후 元宗 末年부터 다시 達魯花赤이 설치되고 있는데 그 例로는 元宗 末年의 脫朶兒 李益 忠烈王 初年の 黑的 石扶天衢 등이며 이들은 어느 정도 高麗王의 統制 아래에 있었던 것 같다.⁴⁹⁾

그러면 耽羅의 경우는 어떠한 인물이 倂設되어 왔으며 그들의 행적은 어떠한 것일까? 元史나 高麗史 등에 보이는 斷片的인 기록들을 摘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④ 「以遜攤爲耽羅國達魯花赤」(元史 卷 8 世祖 至元 12年 6月 戊辰條)
 ⑤ 「丁未濟州達魯花赤遣使來督戍卒 王命金光遠等調四領兵 雖兼近侍 悉皆僉發 使將軍梁公勳等領行」(高麗史 卷 28 忠烈王 元年 8月條)
 ⑥ 「元遣塔刺赤爲耽羅達魯花赤 以馬百六十匹來牧」(同上書 卷 28 同王 2年 8月 丁亥條)
 ⑦ 「甲戌 耽羅達魯花赤塔刺赤如元」(同上書 卷 28 同王 3年 10月條)
 ⑧ 「庚午 耽羅達魯花赤塔刺赤 還自元 帝賜王海東青」(同上書 卷 28 同王 4年 2月條)
 ⑨ 「王上書 中書省曰……又有耽羅達魯花赤於羅州海南地面 擅置站赤……」(同上書 卷 28 同王 4年 7月 壬辰條)
 ⑩ 「將軍朴義還自元 中書省牒曰 耽羅達魯花赤塔刺赤 奏留滯耽羅罪囚 於高麗險惡島子裏教入去 怎生聖旨 那般者道來兩火兒 逃走一擊住一擊不著 依在先體例教耽羅入去 怎生奏呵奉聖旨 別介險惡島子於更教在住的他每識者」(同上書 卷 28 同王 4年 9月 辛丑條)
 ⑪ 「戊子 濟州達魯花赤享王」(同上書 卷 28 同王 4年 11月條)
 ⑫ 「癸亥 濟州達魯花赤享王」(同上書 卷 29 同王 5年 11月條)
 ⑬ 「敕耽羅國達魯花赤塔兒赤 禁高麗全羅等處 田獵擾民者」(元史 卷 11 世祖 至元 18年 5月 壬戌條)

47) 征東行省은 본래 日本 정벌을 목적으로 설치했으나 실패한 후에도 그대로 두어서 내정을 간섭하였고 그 설치 후기에 와서는 元朝의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인 의미가 강하였다. (高柄翊: 前掲論文)

48) 愛宕松男: 元代の都市制度とその起源(東洋史研究 3-4, 1938) pp.15 ~ 23.

49) 高柄翊: 「元과의 關係의 變遷」(韓國史 7, 1973) p.398.

- ⑤④ 「癸酉 元卿自元賽省旨來今 耽羅達魯花赤 自以其鐵匠修戰艦」(高麗史 卷29 同王 6年 8月條)
 ⑤⑤ 「己丑 耽羅達魯花赤塔刺赤還自元…壬申 塔刺赤享王 獻二馬求婚 以內侍鄭孚女妻之」(同上書 卷29 同王 9年 9月條)
 ⑤⑥ 「己亥 元遣濟州達魯花赤來」(同上書 卷29 同王 10年 2月條)
 ⑤⑦ 「二月戊申 宴濟州達魯花赤于正殿」(同上書 卷30 同王 11年條)
 ⑤⑧ 「十一月癸巳 元遣塔刺兒來爲耽羅達魯花赤」(同上書 卷30 同王 13年條)
 ⑤⑨ 「壬戌 右丞阿撒來 按耽羅達魯花赤罪」(同上書 卷30 同王 18年 3月條)
 ⑥① 「己丑 元流耽羅達魯花赤於交趾 右丞阿撒代之」(同上書 卷30 同王 19年 9月條)
 ⑥② 「己卯 賜耽羅達魯花赤織金衣二襲」(同上書 卷31 同王 20年 11月條)
 ⑥③ 「壬戌 元遣濟州達魯花赤來」(同上書 卷32 同王 34年 3月條)
 ⑥④ 「以奴列你他 代其父塔刺赤爲耽羅國軍民安撫使司達魯花赤」(元史 卷38 順帝 元統元年 12月 壬申條)

이상의 내용들을 살펴 보면 耽羅의 達魯花赤으로 임명되었던 人物은 遜攤·塔刺赤 塔刺兒 阿撒 등이었으며 그들의 職務는 대체로 戍卒(防守軍)의 督勳, 牧馬場의 監督이 主였으며 이외에도 站赤의 설치, 流配된 罪囚의 관리, 田獵擾民者의 禁止 등에 관여하였다. 또한 職務上 元朝에의 來往이 빈번한 듯 하며 個中에는 擅權을 다하다가 流配된 者도 보인다.

먼저 防守軍(鎭守軍)에 대해서 살펴 보자. 耽羅에 鎭守軍이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三別抄 正別 직후였다. 즉 元史 卷208 耽羅傳에

- ⑥⑤ 「… 六月(四月的 誤) 評之, 於其地耽羅國招討司 屯鎭邊軍千七百人」

이라 하여 耽羅의 鎭守를 위해 1千7百名の 軍士를 배치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三別抄 正別に 참여했던 兵士들이다. 그것은 高麗史 卷104 金方慶傳에 의하면

- ⑥⑥ 「於是 忻都留蒙軍五百 方慶亦使將軍宋甫演中郎將康社臣尹衡 領軍八百外別抄二百留鎭 班師」

라하여 1千7百名の 병사 중에서 忻都가 남긴 蒙古軍 5百에 金方慶이 남긴 京軍 8百과 外別抄 2百을 합하여 모두 1千5百명이 남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2百名은 失里伯이 招討使로 부임할 때 데리고 온 兵士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이때에 耽羅에 駐屯한 兵力이 특별히 蒙古에서 過견되었던 것은 아니며, 또 그 전부가 蒙古軍이었던 것도 아니다. 그 대부분이 高麗軍이었으며 이것은 이후 元朝가 耽羅를 그들의 直轄領으로 삼으면서도 耽羅의 鎭守軍만은 가능한 한 高麗軍으로 충당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忠烈王 元年, 耽羅 達魯花赤이 使者를 보내어 戍卒을 督勳할 때, 金光遠 등에게 四領兵을 調發케 하였고 同王 3年에도 親從將軍 金子廷에게 防守軍을 耽羅로 抽送케 하였던 것이다.⁵⁰⁾ 그러나 日本 정

50) 高麗史 卷28 忠烈王 3年 3月 乙卯條

벌에 실패한 이후, 忠烈王 8년에는 元朝에서 蒙漢軍 1千4百名을 보내어 耽羅 鎭守軍을 增員하였고⁵¹⁾ 同王 10년에는 閔梨帖木兒를 보내어 軍士를 거느리고 濟州에 來戍케 하였는데⁵²⁾ 이는 日本 정벌 실패에 따른 敵의 보복행위를 막기 위해 耽羅 鎭守軍의 強化 내지는 그들의 日本 정벌 계획을 계속하여 관찰코자 한데서 나온 것이다. 특히 元史에도

㉞ 「… 益耽羅戍兵 仍命高麗國給戰具」(元史 卷11 世祖 至元18年 9月 癸酉條)

라 하여 耽羅의 鎭守兵을 增員하고 戰具는 高麗로 하여금 지급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鎭守軍에 대한 지휘 管轄권도 忠烈王 8년에는 高麗로 하여금 官吏를 파견하여 管領토록 하였다.⁵³⁾ 그러나 한편 耽羅의 鎭守軍은 耽羅의 鎭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日本 정벌이나 合丹의 정벌에도 참가한 바 있었다. 즉 前者에 대해서는 2차 日本 정벌 당시 忠烈왕의 요구에 응하여 耽羅를 鎭守하는 高麗軍을 東征軍에 充員하였었고⁵⁴⁾ 後者인 경우는 忠烈王 15年 合丹의 정벌에 耽羅의 戍兵 1千名을 징발하여 討伐한 바 있었으니 元史나 新元史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㉟ 「丙寅 合丹餘寇未平 命高麗國 發耽羅戍兵千人 討之」(元史 卷16 世祖 至元27年 春正月條)

㊱ 「丙寅 敕高麗國 發耽羅戍兵 討哈丹」(新元史 卷12 世祖 同年 同月日條)

한편 耽羅를 鎭守하고 있는 蒙古軍의 경우는 高麗軍으로 代替하는 방식을 취하여 歸國시키고 도 있으니 元史에

㊲ 「塔剌赤言 頭蓋哥國王出戍高麗 調旺速等所部軍百人以往 今頭蓋哥已回 留軍耽羅 去其妻子已久 宜令他軍更戍 伯顏等議 以高麗軍千人屯耽羅 其留戍四百人 縱之還家 從之」

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 鎭守軍에 대한 兵糧은 高麗에서 부담하였으며⁵⁵⁾ 때로는 出陸 歸家하여 耕種하는 것을 허락하였는가 하면⁵⁶⁾ 力田自給케 하기도⁵⁷⁾ 하였다. 그러면 당시 耽

51) 同上書 卷29 同王 8年 2月 癸巳條

52) 高麗史 卷29 忠烈王 10年 6月 庚午條

53) 同上書 同王 8年 12月 乙巳條, 그러나 耽羅의 鎭守軍을 管轄하기 위한 高麗로부터의 官吏 파견은 이에 앞서 同王 同年 9월에 洪子輪이 耽羅防護副使로 임명되었고 1년 뒤에는 護軍 朴秀와 崔元老를 파견하여 耽羅를 鎭守하였다. (同書 同王 8年 9月 乙亥條, 同 9年 9月 庚申條)

54) 同上書 卷29 忠烈王 6年 8月 辛酉條, 그런데 이때 耽羅 鎭守軍 1千名 가량을 선발 했던 것 같다(高麗史節要 卷20 同王 6年 11月條)

55) 高麗史 卷28 忠烈王 3年 2月 丁卯條, 同王 3年 7月 丁未條, 同書 卷29 同王 8年 正月 乙亥條

56) 同上書 同王 7年 7月 癸卯條

57) 元史 卷11 世祖 至元 18年 6月條에 「壬午 命耽羅戍 力田以自給」이라고 하였다.

羅에 駐屯하고 있었던 鎮守軍의 軍額은 대체 얼마나 되었던 것일까? 三別抄 정벌 직후에는 1千7百명을 주둔시켰다고 하였고 元宗 15年 2月 糧料支給 과정에서 나타난 숫자는 1千4백명이며 이후 增員, 징발이 되풀이 되고 있으나 아마 많아도 2千名 전후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 牧馬場의 설치와 그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元朝가 耽羅에 牧馬場을 처음 開設한 것은 忠烈王 2年이었다. 즉 塔刺赤이 達魯花赤으로 赴任할 때 말(馬) 160匹을 放牧한 것이다.⁵⁸⁾ 이후 同王 3年에는 元朝에서 東西阿幕을 설치하여 牛·馬·駝·驢·羊 등을 放牧하고 達魯花赤으로 감독케 하였는가 하면⁵⁹⁾ 특히 牧畜에 관한 일을 專擔케 하기 위해 斷事官을 파견하기도 하였다.⁶⁰⁾

그리고 牧馬場이 처음 개설된 곳은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條에

⑦「高麗忠烈王時 元塔羅赤載牛馬駝驢羊來 放于水(首)山坪」(()안은 耽羅志記載)

이라 하여, 水山坪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元朝에서 耽羅에 牧馬場을 開設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 정벌에 필요한 馬匹을 조달하기 위한 것도 이유이겠지만 그 보다는 「房星分野」 즉 放牧에 적합한 天然의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元史에는 元代의 諸牧場 중에서 耽羅 牧場을 首位로 기재하고 있다.⁶¹⁾ 그런데 耽羅의 牧馬場은 高麗의 行政力이 미치지 못하는 治外法權的인 存在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忠烈王 20年 耽羅를 高麗에 還附하면서도 그 貢馬만은 그대로 시행토록 한데서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元代에의 貢馬는 계속되었고 그와 관련된 方物까지도 貢獻의 對象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牧馬場에 대한 元朝와의 관계는 元明交替期에 이르러서 新局面을 맞이하게 된다.⁶²⁾

한편 元朝에서는 耽羅를 流配地로도 사용하여 많은 罪人 盜賊을 비롯하여 魏王 阿木哥, 李刺海大王·徵政使 羅源 및 僧侶 등 위로는 王族으로부터 大臣들 까지도 流配된 것이다.⁶³⁾

IV. 結 論

이상에서 元史와 新元史 元高麗紀事의 耽羅 관계 記事를 중심으로 高麗와 元 및 耽羅와의 관

58) Ⅲ節 引用 記事 ④ 參照

5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條

60) 高麗史 卷31 忠烈王 22年 2月 乙丑條.

61) 元史 卷100 兵志 馬政條

62) 南都泳:「朝鮮時代濟州島牧場—韓國牧畜業研究의 一端—」(韓國史研究 4, 1969 所牧) p.97

63) 高麗史에 의하면 忠烈王 元年 4월에 盜賊 百餘人을, 同王 3年 5월에 罪人 33人, 同年 8월에 40人을 각각 濟州에 유배시켰다.

계를 대충 살펴 보았다.

元에서는 高麗를 服屬시키고 나서 그 餘勢를 몰아 바다 건너 日本과 南宋까지 經略하려는 野慾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시 南宋과 日本과의 交通의 要地에 위치하였고 또 戰略上의 要衝이기도 했던 耽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元廷에서는 高麗를 통해 日本에 使臣을 파견하여 朝貢할 것을 強要하는 한편 耽羅에 대해서도 高麗를 통해 耽羅 使者의 元朝에의 入朝를 증용하여 耽羅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表面化시키고 있다.

이리하여 元朝에서는 전략상의 요충인 黑山島와 耽羅를 살펴 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使臣을 파견하였는가 하면 일이 여의치 않을 때는 武力 정벌도 不辭할 양으로 高麗에 南宋이나 日本 정벌에 필요한 軍糧과 兵員의 징발 戰艦의 건조를 命하였다.

그러나 高麗의 抗蒙勢力은 高麗의 對蒙講和 결의 이후에도 蒙古에의 굴복을 거절해 왔고 그러한 거절은 곧 三別抄의 抗蒙鬭爭으로 展開되었다. 그러나 珍島를 據點으로 對蒙抗爭에 隨했던 三別抄는 珍島 함락 이후 耽羅로 거점을 옮겨야만 했으며 이러한 三別抄의 耽羅入據는 蒙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즉 高麗를 통한 日本에의 朝貢 권유는 진전이 없고 그들의 전략상 중요시하던 耽羅는 바로 對蒙抗爭의 據點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元史 耽羅傳에 나타난 바와 같이 日本을 먼저 정벌할 것이냐 아니면 耽羅의 三別抄를 먼저 평정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여간 苦心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日本의 從否 여하는 계속 관망을 하면서 먼저 耽羅를 정벌하는 것으로 낙착되었고 마침내 대규모의 耽羅 정벌군을 조직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리하여 元宗 14年(元 至元 13, 1273) 耽羅의 三別抄는 珍島에 이어 다시 麗蒙聯合軍에게 平定되었고 이후 元朝에서는 日本 정벌과 南宋 經略을 겨냥하고 또 그들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기지로써 耽羅를 중시하여 官府를 설치, 지배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이 설치한 官府는 招討司 이후 무려 4·5 차나 官府의 名稱을 改變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 三別抄 平定 후에 招討司를 설치하여 耽羅軍民의 회유에 나서고 있으며 그것도 약 1년여의 시일이 지난 후에는 總管府로 代替하고 牧馬場을 설치하는 등 日本 정벌의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갔다. 總管府에의 代替는 軍事的인 측면에서 行政的인 次元으로 명분상 그 名號를 바꾼 것이나 그렇다고 軍事的인 측면이 조금도 감소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日本 정벌의 실패는 元廷으로 하여금 敵의 보복적 침입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고, 그렇다고 그들의 정벌 계획은 단념할 수가 없어서 다시 군사기관인 安撫司로 代替하고 耽羅 鎮守軍을 增員시키는 등 부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世祖가 죽고 成宗이 즉위하여 日本 정벌 계획도 단념되면서 忠烈王은 재빨리 耽羅還附를 元廷에 要求하여 승락을 받게 되었다. 이때에 와서 耽羅는 濟州로 名稱이 바뀌고 高麗에서 官吏를 파견하여 진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耽羅 반환 이

후에도 元朝에의 貢馬 등의 進獻은 계속되었고 忠烈王 26年(元 大德4, 1300)에는 牧馬場 관리 등을 구실로 다시 總管府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高麗에서는 倭寇의 防止 등을 목적으로 鎮守機關인 萬戶府로 代替해 준 것을 要請하였고 元朝에서도 이를 승락하여, 이후부터는 征東行省에 所屬되어 控制日本 하는 관부로 麗末까지 계속되었다.